



교육봉사활동 강의계획서

1

교과목 개요

교과목명	교육봉사활동	교과개설	매학기 개설
교과코드	EDU9005(학부) EED5144(교육대학원)	담당교수	교직부장
이수학점	2학점	이수대상	2009 이후 입학 교직이수자

2

교과목 이수 절차

- [3. 봉사활동 실시 절차] 에 의거 재학(일반교직 대상자는 선발 이후) 중 지속적으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
- 실시한 봉사 활동의 누계가 60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학기에 **교과목 수강신청**
※ 수강신청 시 교과코드 확인: **학부(EDU9005)**, **교육대학원(EED5144)**
- 포털 상에 승인된 확인서를 토대로, 학기말 교직부에서 수강신청 학생의 학점 부여(S/U)

3

봉사활동 실시 절차

①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	-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봉사 계획을 포털에 등록(포털 상에서 직접 입력) 『포털→교육지원→내학사행정→교직→교육봉사활동→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등록』
②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승인	-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심사 및 승인 소속 학과→단과대학→교직부 승인 ※ “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” 인 경우(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안내 참조)
③ 교육봉사활동 (실제 활동) 실시	계획서 승인 후 봉사활동 실시 가능 -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봉사활동 실시
④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	- 봉사활동 종료 후 봉사 대상 기관장이 날인한 확인서 등록(서식1 활용, 스캔 업로드) 『포털→교육지원→내학사행정→교직→교육봉사활동→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등록』 ※ “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” 인 경우: 확인서와 비영리기관 인가증(사본) 등록 후 승인 요청 바람!
⑤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승인	-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(및 비영리기관 인가증) 심사 및 승인 소속 학과→단과대학→교직부 승인

▲ 위 절차에 의거 재학 중 봉사를 실시하며, 누계가 60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학기에 **수강신청**

4

봉사 내용 인정 범위

- 1일 최대 8시간 인정
- 교통비 등 실비에 이외 **보수나 금전(장학금 포함)**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
- 봉사 대상이 유, 초, 중, 고교생이 아닐 경우 인정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
(성인 일반인,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는 인정되지 않음)
- 보조교사, 학생 지도, 방과 후 수업 지도 등 **교육 관련 활동**일 경우에만 인정
- 청소, 시험감독, 도서 대출 등 단순 근로 인정 불가
- **해외 봉사는 인정 불가**

5

봉사 가능 대상 기관

-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: 유아교육법, 초·중등교육법,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-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: 기관 인정 여부 확인 후 봉사 실시
※ **지방자치단체,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(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)**
- 영리 기관·단체에서의 교육봉사활동 제한(**개인 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불인정**)
※ 『포털→교육지원→내학사행정→교직→교육봉사활동→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안내』참고

6

유의 사항

- [**3** 봉사활동 실시 절차] 준수
- **학생 본인이** 포털에 등재한 계획서 및 확인서의 **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**
 - 교육봉사활동 **실시 전**, 계획서 제출 및 **승인 취득 여부** 확인
 - 교육봉사활동 **종료 후**, 확인서 제출 및 **승인 취득 여부** 확인
- 계획서 및 확인서 내용 미비 시 **미승인**될 수 있음(사례 참조)
 - 사례1: 기관 정보, 소재지, 활동 일지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계획서
 - 사례2: 기관 직인, 기관명, 활동 시간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확인서
 - 사례3: 화질이 불량(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·업로드) 한 확인서
 - 사례4: 계획서 내용에 비해 총 봉사시간, 봉사 기관 등이 다른 확인서
- **시간 부풀리기, 위장 활동, 허위 확인서 확인 시 이수 학점 취소**

7

기타

-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면제 가능
- 관련 문의: 소속 **학과실**,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, 교직부(☎ 530-5922)